

民間工事標準都給契約書

다음은 건설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168호)에 의한 민간
공사도급시에 쓰이는 계약서를 뜻한 것이다. 동계약서는 지
난 76년 3월3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건설협회제공/

工事都給契約書			
1. 工事名:			
2. 工事場所:			
3. 工事期間: 着工	年	月	日
	完工	年	月
4. 引渡時期:	年	月	日
5. 都給金額: 一金	원정		
6. 都給金額支給:	先給金一金	원정	
	既成部分給	回	
完工拂(竣工検査完了時)			
當事者は 위 내용과 別添 工事都給契約條件, 設計図()張, 示方書()冊에 의하여 이 工事都給契約을 締結하고 契約書 2通을 作成하여 각각 1通씩 가진다.			
19 年 月 日			
住 所:	回		
發注者	回		
住 所:	回		
受 給 者	回		
住 所:	回		
發注者保證人	回		
住 所:	回		
受給者保證人	回		

工事都給契約條件

第1條 (總則) ① 工事発注者(이하 甲이라 한다)와 工事受給者(이하 乙이라 한다)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계약을 이행한다. ② 甲이 工事監督員 또는 監理者(이하 “丙”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에는丙은 이 계약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협력한다.

第2條 (受給者) ① 乙은 이 계약條件과 설계도서(図面, 示方書, 構造計算書, 現場説明書 등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 및 이를 기초로 작성한 詳細図 등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乙은 계약缔結後()日内에 工事都給內譯書 및豫定工程表를 작성하여 甲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는다.

③ 乙은 労務基準法, 產業災害補償保險法 기타의 法令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第3條 (下都給) 乙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第3者에게 下都給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甲의 書面承諾를 얻어야 한다. 다만, 単種工事業者에게 下都給한 경우에는 통지로서 갈음한다.

第4條 (権利·義務의 讓渡 등) ①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

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讓渡 또는 承繼시킬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書面承諾와 保証人の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工事目的物 또는 工事現場에 반입하여 검사완료된 工事材料는 第3者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또는 損保目的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書面承諾와 보증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 (保証人) ① 保証人は 당사자의 契約不履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金錢債務에 대하여 그 당사자와 連帶책임을 진다.

第6條 (監督員 또는 監理者) ① 甲이 第1條第2項에 의하여丙을 선임한 때에는丙은 다음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甲을 대행한다.

1. 施工一般에 대하여 지시하고 立会하는 일.
2. 乙이 작성 또는 제출한 工事都給內譯書·豫定工程表·工作図·模型 기타 示方書에 명시된 서류를 검토 또는 검사하는 일.
3. 工事材料와 施工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立会하는 일.

4. 공사의 既成部分検査·竣工検査 또는 工事目的物의 引渡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工事監督 또는 監理에 관하여 甲이 지정하는 일.

② 乙이 甲에 대하여 檢査·檢討·立会 등을 요구한 때에는 甲은丙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이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③ 工事에 관한 당사자간의 통지나 협의는丙 또는 現場代理人에게 연락하여 행한다.

第7條 (現場代理人) ① 乙이 現場代理人을 두는 때에는 미리 甲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工事現場에 상주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第8條 (工事関係者에 대한 異議) ① 乙의 現場代理人, 下受給人 또는 勤勞者中에 공사의 시행·管理上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交替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甲의 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은 이에 응한다.

②丙의 監督 또는 監理上의 처리가 현저히 不適當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은 甲에 대하여 그 事由를 명시하여交替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乙의 要求가 이유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甲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9條 (工事材料) ① 工事材料는 甲의 檢査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檢査에 소요되는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示方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에 소요되는費用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③ 檢査結果 불합격된 工事材料는 지체없이 工事現場으로부터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④ 工事材料中 示方書 등에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中等品質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乙은 甲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檢査完了된 工事材料를 반출할 수 없다.

第10條 (支給材料·貸與品) ① 甲의 支給材料 또는 貸與品은 乙의 立会下에 인도한다. 이 경우 乙은 그 品質 또는 規格이 사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甲에게 그 代替를 요구할 수 있다.

② 支給材料 또는 貸與品의 인도시기는豫定工程表에 의하고 그 인도 장소는 示方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 현장으로 한다.

③ 乙은 支給材料 또는 貸與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保管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하고 남은 支給材料는 設計図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甲의 지시에 따른다.

⑤ 工事內容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게 된 支給材料 또는 사용완료된 貸與品은 지체없이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第11條 (材料의 配合 등) ① 工事材料中 配合을 요하는 것은 甲의 立会下에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見本検査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水中 또는 地下에 埋没되는 공사 기타 完工後 外部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甲의 立会下에 시공하여야 한다.

第12條 (設計의 疑問·條件의 變更)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乙은 甲에게 통지한다.

1. 設計図書와 工事現場의 상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반 등의 施工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發見된 때

2. 設計図書 또는 甲의 지시에 不當하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을 때

② 甲이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를 하고 乙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工事內容·工期·都給金額 등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甲·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乙은 工事を 중지할 수 있다.

第13條 (不適合한 工事) ① 甲은 設計図書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乙은 都給金額의 増額 또는 工期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부적합한 施工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乙은 그 책임이 없다.

1. 甲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한 때

2. 支給材料·貸與品·指定材料의 성질 또는 지정된 시공방법에 의한 때

3. 甲이 인정 또는 지시한 工事材料나 施工方法에 의한 때

4. 기타 甲의 归責事由에 기인한 때

第14條 (工事의 變경) ① 甲은 工事內容의 變경 또는 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工期의 變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乙은 불가항력 기타 사유가 있는 때에는 甲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工期의 變경을 요구할 수 있다.

第15條 (都給金額의 變更)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는 都給金額의 變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工事의 變경 또는 추가가 있는 때

2. 支給材料의 品目·數量·引渡場所의 變경이 있는 때

3. 工期內에 物価·賃金 등이 都給金額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때

② 第1項에 의하여 都給金額의 變경요구가 있는 때에는 甲·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增減額의 산정은 工事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工事都給內譯書에 의하고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時価에 의한다.

第16條 (應急措置) ① 乙은 災害防止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應急措置를 취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甲이 災害防止 기타 工事의 施工上 긴급 부득이한 때에는 乙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措置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甲·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第17條 (一般的損害) ① 공사를 完工引渡하기 前에 工事目的物·工事材料·貸與品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그 손해가 甲의 归責事由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8條 (第三者에게 미친 損害)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第三者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이 그 賠償責任을 진다. 다만, 乙만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때에는 甲은 이에協力하고 그 손해가 乙의 責任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때에는 甲이 책임을 진다.

第19條 (不可抗力에 의한 損害) ①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工事의 既成部分이나 檢査完了된 工事材料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損害가 발생하였을 때 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注意義務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의 부담으로 하되 그 損害額은 甲·乙이 협의결정한다.

第20條 (検査 등) ① 乙이 工事を 완공한 때에는 甲에게 竣工検査를 요청하고 甲은 요청일로부터()日 이내에 乙의 立会下에 竣工検査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檢査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乙은 甲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補修 또는 改造하여 甲의 겸사를 받아야 한다.

③ 甲은 工事目的物의 일부가 겸사에 합격된 때에는 그 既成部分의 都給金額 상당액의 全額을 지급하고 그 引渡를 받을 수 있다.

④ 乙은 工事が 완공된 후에는 지체없이 假設物의 철거

기타 工事現場의 정리를 한다.

⑤ 第 4 項의 處理가 지연되고 최고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이 처리하고 그費用을 乙에게 요청할 수 있다.

第21條 (都給金額의 支給 등) ① 第20條 第 1 項의 檢사에 합격한 때에는 甲은 乙에게 도급금액의 全額을 지급하고 同時に 乙은 工事目的物을 甲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甲이 都給金額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한 때에는 乙의 청구에 의하여 工事에 착수할 때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乙이 既成部分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甲은 檢사에 합격한 既成部分 및 工事現場에 반입하여 檢사완료된 工事材料에 대한 都給金額상당액의 10分의 9를 청구일로부터 () 日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乙이 第 2 項에 의하여 先給金을 받은 때에는 第3項의 청구액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다.

請求額 = 第 3 項에 規定된 金額

$$\times \frac{(\text{都給金額} - \text{受領한 先給金})}{\text{都 紿 金 額}}$$

第22條 (部分使用) ① 甲은 工事施工中이라도 乙의 동의를 얻어 工事目的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은 그 사용부분에 대한 管理責任을 진다.

② 甲이 第 1 項의 부분사용에 의하여 乙에게 損害를 미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23條 (瑕疵擔保) ① 第21條 第 1 項의 규정에 의한 竣工検査日로부터 () 年 内에 工事目的物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室内裝飾・家具 등의 하자는 引渡한 때에 甲이 檢사하여 즉시 그 補修 또는 代替를 요구하지 아니하면 乙은 第 1 項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숨은 하자에 대하여는 引渡日로부터 6個月間 담보책임을 진다.

③ 工事目的物의 하자가 甲이 지시한 시공방법에 따른 시공 또는 第22條 第 1 項의 규정에 의한 部分使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甲의 부담으로 한다.

第24條 (履行遲滯) ① 乙이 契約期間內에 공사를 완공, 引渡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된 每 1 日에 대하여 都給金額(검사완료한 既成部分이 있는 경우에는 都給金額에서 그 부분의 都給金額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의 () 분의 () 의 違約金을 甲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甲이 工事目的物의 인도기일에 都給金額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된 每 1 日에 대하여 都給金額(乙이 수령한 先給金 또는 既成部分의 있는 경우에는 都給金額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의 () 분의 () 의 違約金을 乙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甲이 第 2 項의 지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乙은 工事目的物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의 관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甲이 부담하여야 한다.

第25條 (甲의 工事中止 또는 解約權) ① 甲은 사정에 의

하여 工事を 중지시키거나 契約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는 乙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甲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工事を 중지시키거나 또는 契約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着工期日内에 착공하지 아니할 때

2.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工期内에 工事を 完工할 가능성이 없을 때

3. 第 3 條 또는 第13條 第 1 項의 규정에 위반하는 때

4. 乙이 第26條 第 2 項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契約의 해제를 요구할 때.

第26條 (乙의 工事中止 또는 解約權) ① 乙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工事を 중지 할 수 있다.

1. 甲이 先給金 또는 既成部分의 지급을 지체하고 乙이相當한 기간을 정하여 催告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

2.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第12條 第 3 項・第14條 第 2 項 또는 第15條 第 2 項에 의한 協議에 불응할 때.

② 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契約을 해제할 수 있다.

1. 甲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工事遲延 期間 또는 工事中止期間이 工期의 3분의 1 이상이 될 때.

2. 甲이 工事內容을 변경함으로써 都給金額이 3분의 2 이상 감소되는 때

3. 甲이 都給金額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③ 第 1 項 및 第 2 項의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27條 (解約後의 처리) ① 契約을 해제한 때에는 工事의 既成部分과 檢사완료한 工事材料는 甲이 引受 함을 원칙으로 하되 甲・乙이 協議하여 정산한다.

② 甲이 第25條 第 2 項에 의하여 契約을 해제한 경우 精算結果過拂이 있는 때에는 乙은 그 過拂額에 대하여 支給日로부터 年利()%의 利子를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③ 第 1 項 이외에 각 当事者에게 귀속하는 物件이 있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引繼・引受 등의 뒷처리를 한다.

④ 第 3 項의 경우에 当事者一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뒷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이 처리하고 그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

第28條 (紛淨) ① 이 契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当事者双方이 協議・選定한 第 3 者에게 분쟁의 중재를 의뢰하고双方은 그 중재에 따른다.

② 第 1 項에 의하여 紛淨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当事者는 전설업법에 의한 建設業紛淨調整委員會에 조정을申請할 수 있다.

第29條 (契約外의 事項) 이 契約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甲・乙이 協議하여 결정한다.